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19-187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2. 17.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을 『사회봉사 10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중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11. 21. 청구인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학급교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 11. 25. 이 사건 처분을 알고서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접수했던 청구인에게 오히려 무고하게 누명을 씌우고 허위진술을 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가해자 처분을 받게 하였다.

나. 자치위원회는 피해사실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그 학부모 진술을 먼저 듣지 않고,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먼저 진술할 기회를 주어서 청구인 측 진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학생 진술이 사실 아님을 증빙하는 반 친구들의 녹음기록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자료로 정당방위 행동이므로 증거자료 조건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생의 장난으로 목을 감았다는 진술만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기에 위법하다.

다. ◇◇◇학생은 두 차례나 심하게 청구인의 목을 졸라 줄일 뻔했다. 1차 사건에서 청구인이 웃어넘겼다고 말하나 당시 청구인은 “장난이 아니니 제발 놔줘” 라고 했지만 ◇◇◇학생은 더 세게 목을 졸랐기에 웃을 수가 없었고, ◇◇◇학생은 모른 척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그때서야 인정했으며, 2차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은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청구인 학부모가 직접 CCTV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행정적 절차를 안내 받지 않아서 결국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는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여겨지고, 오히려 청구인을 가해자로 몰아서 부당한 처분을 받게 하였다.

라. ◇◇◇학생이 제출한 둘이 주고받았던 편지와 문자를 미뤄봤을 때, 9월 말까지 두 학생이 친분을 잘 유지하며 지냈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담임교사가 ◇◇◇학생과 잘 지내라는 부탁에 마지못하여 잘 지냈던 것뿐이며, 이 후에도 발길질 60여 회와 머리 채 휘어잡고 흔들기 20여 회 이상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더 많았다.

마. ◇◇◇학생이 다른 층의 교실로 학급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급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등 피해사실이 지속되고 있고, 청구인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동안, 청구인이 가해자라고 기존 반과 현재 이동한 반, 다른 반 등에 소문을 내서 오히려 청구인을 가해자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 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까지 받았으며, 자살 기도까지 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낯선 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그 학부모의 진술을 먼저 듣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본 사안은 양측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서 두 학생을 ‘관련학생’으로 간주하고, 학교행정의 보편성에 따라 관련학생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2019. 11. 12.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청구인과 그 학부모가 참석해서 모든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하였기에 청구인의 진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
- 나. 증거로 제출한 반 친구들 증인 녹음기록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인터뷰하고 녹취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학생이 두 차례나 청구인의 목을 졸라 죽일 뻔했다는 사실 주장에 대해, 1차 사건은 2019. 3. 29.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 목격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중 2명은 청구인이 웃어넘겼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들도 노는 과정 일부로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나, ◇◇◇학생이 가해사실을 인정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를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판단하여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2차 사건은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9월 말~10월 초 점심시간에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나, 목격자가 없었고 ◇◇◇학생도 부인하며, CCTV 조사결과 해당행위는 찾을 수 없었기에 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 라. 그 후에도 발길질 60여 회, 머리채 휘어잡고 흔들기 20여 회 이상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안 조사를 15일 이상, 양측 학부모와 각각 20회 이상 통화 및 면담을 하며 다룬

사안조사 중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겨지며, 특히 ◇◇◇학생 학생이 제출한 청구인과 ◇◇◇학생 둘이 주고 받았던 문자나 편지를 보면 9월 말까지 두 학생은 친분을 유지하며 잘 지낸 정황이 보인다.

마. 청구인은 ◇◇◇학생 때문에 2주 이상 결석하였는데, 아는 친구 하나도 없는 다른 반에 가라는 것은 청구인에게 심리적으로 사형선고와 같다고 하는 말하나, ◇◇◇학생은 학급 교체되어 같은 반에 없는데도, 청구인은 그 뒤로 단 하루만 출석하고 계속 결석상태로, 청구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나오고 싶는데 ◇◇◇학생이 같은 반이라 못 나온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은 해결이 나지 않을 시 이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는 유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과 동반 자살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위기행동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 답변서, 학생 확인서, 문자 내역 등 증거자료,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및 관련학생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9. 10. 2.경 ◇◇◇학생이 청구인에게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상담을 했는데, 청구인은 그 고민상담 내용을 ASK(익명질문) 어플에 공개 했고, 익명으로 ◇◇◇학생에게 수차 ‘무리에 불편한 친구 있지?’ 등 질문을 하였으며,

◇◇◇학생은 고민상담을 청구인에게만 했으므로 청구인에게 ASK 어플에 글을 올렸는지 물어보았는데 청구인은 부정적 말투로 받아쳐서 둘 간에 사이가 벌어졌고, 청구인은 청구인, ◇◇◇학생, A학생, B학생 등 친구들이 있는 페이스북 방에서 ◇◇◇학생을 강퇴시키고, 같은 반 친구에게 ‘◇◇◇학생을 거르겠다’ 라는 말했으며, ◇◇◇학생은 이후 친구들과 문제가 생겨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3주간 혼자 지내게 됐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학생에게 했던 행위들은 학교폭력법상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1) 청구인은 ◇◇◇학생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의 허위진술에 의해서 가해행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자치위원회회의록 및 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에 따르면 청구인은 ◇◇◇학생이 친구에 대한 했던 고민상담 내용을 ASK 어플에 공개했고, 익명으로 ◇◇◇학생에게 수차 ‘무리에 불편한 친구 있지?’ 등 질문을 하였던 사실, ◇◇◇학생이 ASK 어플에 글을 올렸는지 물어오자 청구인은 부정해서 사이가 벌어지자, 페이스북 방에서 ◇◇◇학생을 강퇴시키고, 같은 반 친구에게 ‘◇◇◇학생을 거르겠다’ 라는 말했고, 이후 ◇◇◇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3주 정도 혼자 지내냈던 사실들에 관하여 청구인은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학생 간 둘이 주고받았던 문자내역들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학생이 홀로 지내다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과) 화해가 된 것이 용서가 안 된다는 취지로도 말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서의 진술순서가 위법하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반 친구들 녹음기록도 듣지 않아서 증거채택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자치위원회는 본 사안은 청구인과 ◇◇◇학생 양측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서 두 학생을 ‘관련학생’으로 간주하고, 학교행정의

보편성에 따라 관련학생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했던 것이고, 청구인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 측이 제출한 반 친구들 녹음기록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녹음한 자료로 판단되어 위원들이 청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청구인은 ◇◇◇학생이 두 차례나 청구인의 목을 졸라 죽일 뻔했고, 발길질 60여 회, 머리채 휘어잡고 흔들기 20여 회 이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 3. 29. 점심시간에 당했다는 1차 사건에 관해서는 목격자들이 있고 ◇◇◇학생도 인정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학생에 대해서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이 9월 말~10월 초경 점심시간에 당했다는 2차 사건에 관해서는 목격자가 없고 ◇◇◇학생도 부인하며, CCTV 조사결과 해당행위는 찾을 수 없었기에 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이며, 발길질 60여 회, 머리채 휘어잡고 흔들기 20여 회 이상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는 주장은 사안조사 중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실제 ◇◇◇학생이 제출한 청구인과 ◇◇◇학생 간 문자나 편지내용을 볼 때 2019. 9. 말경까지는 청구인과 ◇◇◇학생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던 정황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서, 심각성 2점, 지속성

1점, 고의성 0점, 반성정도 3점, 화해정도 2점으로 결정하여, 총 8점 제4호 사회봉사(10시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산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결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자치위원회는 부가적 판단요소인 선도가능성을 판단하면서 청구인에게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7호 ‘학급교체’ 조치로 가중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청구인은 낯선 반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반이었던 ◇◇◇학생은 학급교체 처분이 되었고, 현재 시점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학년이 변경되는 시점이어서 청구인에게 선도가능성을 이유로 가중한 처분할 필요성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학급교체』의 처분을 『사회봉사(10시간)』로 감경하여 처분한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